

# 노사협의회(연구원발전협의회) 현황

작성기준일: 2024. 4. 30.

## 1. 관련 규정

-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
- 연구원 연구원발전협의회 운영규정

## 2. 구성 및 기능

- (위원 구성) 사용자위원 / 근로자위원 각 8명
  -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: 근로자가 선출
  -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: 원장과 원장이 위촉하는 자
- (위원 임기) 2023. 5. 1.~2026. 4. 30.(3년)
  - \* 제7대 근로자위원 선출에 따른 근로자위원 임기(연임 가능, 후임자 선출시까지 계속 직무 담당)
- 협의회 기능
  - (안전상정)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한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해 연구원 경영에 관한 사항 중 관련 규정에 따라 협의회에서 보고 · 협의 · 의결해야 하는 사항을 구분하여 안전 상정 및 처리
  - (고충처리) 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
    - \*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 고충처리위원회를 협의회 위원 중 구성
    - \* 고충의 범위: 법·규정·절차에 정하여진 연구원 업무 및 생활에 관련된 사항,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

## 3. 운영 방법

- (회의)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, 필요 시 수시로 임시회의 개최
- (회의 성립 및 의결)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, 출석위원 2/3이상 찬성으로 의결(의사진행은 매 회의 시 윤번 교대로 운영)
- (회의결과 공개) 회의결과를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공지